

3. 새로운 제11-나장(공급망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1-나장
공급망 협력**

**제11나.1조
목적**

1. 이 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공급망 복원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양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및 제6장(통관 및 무역원활화)을 포함하여, 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 협정 내 다른 장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이 기존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WTO, G20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포럼에 따른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인정한다.

**제11나.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핵심 공급망이란 국가안보, 공중보건 및 안전, 전략적 경제 분야나 경제 전반, 또는 핵심 국가 인프라에 필수적인 원자재, 중간재 및 소비재의 흐름을 말한다. 이는 첨단기술, 의료용품, 에너지 및 핵심 광물자원용 소재,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망 교란이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결정한 바와 같이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의 생산, 국경 간 이동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중대하게 저해하

는 심각한 중단, 지연 또는 부족을 말한다.

제11나.3조

핵심 공급망에 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역량상 제약 및 양국 경제의 상이한 특성뿐만 아니라 상이한 분야와 상품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핵심 공급망의 안정성, 복원력 및 효율성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위하여 우선순위 분야와 관련 핵심 공급망의 구체적 목록에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이 목록에 대한 검토를 지속한다.
3. 양 당사국 간 핵심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핵심 공급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 나. 핵심 공급망에 관한 정보, 지식, 우수 관행 및 연구를 교환한다.
4. 양 당사국은 또한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 및 개발에 협력하며 기업 간 관계를 증진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 표준, 절차 및 상호인정약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나.4조

공급망 교란에 대한 협력

1.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거나 당사국이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11나.6조제2항에 따른 지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비상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회의는 요청된 날 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2. 요청 당사국은 교란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는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안

전, 경제 또는 핵심 국가 인프라에 대한 영향, 교란의 원인 및 예상 지속기간, 영향을 받은 분야, 이미 했거나 계획된 대응조치, 그리고 도움이 될 다른 쪽 당사국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요청 당사국은 비상 회의 전에 그러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요청 당사국의 대응을 지원하는데 협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영향을 받는 분야의 수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같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는 조치와 대응에 협력한다.

나. 위험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공급원과 같은 이용 가능한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과의 논의를 촉진하고 영향을 받은 공급망 분야에서 비즈니스 매칭을 장려한다.

제11나.5조

민간 부문 협력

1. 각 당사국은 공급망과 관련된 자국의 정책 및 조치의 개발 시, 적절한 경우, 민간 부문과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의 창출 또는 유지 등을 통하여 자국의 핵심 공급망 정책에 대한 민간 부문과의 논의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민간 부문이 복원력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망 교란 동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치 또는 대응과 관련된 우수 관행 및 지침을 자국의 민간 부문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양국 경제 내에서 기업 간 파트너십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제11나.6조
공급망회복력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회복력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제15.1조(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11나.3조 및 제11나.4조에 따른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급망 교란 동안 조정을 위한 비상연락채널 역할을 하는 접촉선을 지정한다.

제11나.7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